

권두언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공지사항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Contents

권두언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공지사항

01

권두언



김완희_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통합·운영된 지 1년 여가 되었다. 2010년 7월 설립 이후 민간기구인 공인회계사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센터 위상의 확립을 들 수 있겠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의 일원이 됨으로써 1년 단위 용역계약 방식의 불안정성을 일소했다.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회성 업무가 아닌 정부가 직접 수행할 지속성 업무로 인정받은 것이다. 아울러 재원과 신분의 안정성도 확보되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업무 성취도 제고라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 연구를 필두로 국가재정 추계, 재정정책 효과 분석, 재정사업성과관리, 공공기관정책 지원 등 나라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재정 및 공공기관 부문의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회계정보 활용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받음으로써 업무의 외연 확대와 내적 성숙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통계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센터의 기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분야 연구에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업 관리 및 행정 역량의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설립 후 20여 년간 성공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축적된 연구관리 및 행정 노하우를 이식함으로써 센터는 본연의 기능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업무 영역의 확대이다. 종전의 센터는 민간수탁자로서 국가가 계약을 통해서 정한 범위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원이 된 이후 기존의 주요 업무에 덧붙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회계 및 재정통계와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장기 공공부문 통합부채 집계방식’, ‘국고보조금 통합 회계관리제도 구축’, ‘지방자치단체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규정’ 등 다양한 주제의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 혹은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센터의 내외부 위상은 물론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센터는 3년여의 서울 근무를 종료하고 본원과 함께 세종시 청사로 이전하였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본원과 같은 청사에 근무함으로써 완벽한 통합을 이루었으며 업무의 주요 파트너인 정부 부처와도 10여분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화도 있었다. 서울 근무 시에는 주거지들이 산재해 있고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서 퇴근 후 각각 귀가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세종에 내려 온 후에는 집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한정적이어서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삼삼오오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업무상 직장 동료들 넘어서 한 동네 이웃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냉철한 전문성에 훈훈한 가족애가 더해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인지 자못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02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해외동향

가.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동향

1) IPSASB, IPSAS 제33호 ‘발생주의 기준의 최초 채택’ 발표¹⁾

IPSASB는 2015년 1월 29일, 새로운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인 IPSAS 제33호, ‘발생주의 기준의 최초 채택’을 발표하였음

IPSASB의 의장인 Andreas Bergmann은 “IPSASB는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IPSAS로 전환하고 있는 실체들에 지침과 면제조항을 제공하는 포괄적 기준을 개발했다. 전환기간 동안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이 기준서의 발행은 IPSASs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둔 국가(기관)들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했음

IPSAS 제33호는 최초 3년간은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임

본 기준서는 자산 및 부채의 신뢰할 만한 역사적 원가 정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 또한 전환기간의 IPSAS 재무제표의 비교정보와 실체의 최초 IPSAS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루고 있음

2) IPSASB, 타 회계실체 투자지분 관련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발행

IPSASB는 2015년 1월 30일, IPSAS 제34호~제38호의 5가지 IPSASs를 발표하였음. 이 5가지 기준서는 현행 기준서(IPSAS 제6호, IPSAS 제7호, IPSAS 제8호)의 요구사항을 대체함

| 기준서 명 | 관련 현행 기준서 |
|--|---|
| IPSAS 34, ‘별도 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IPSAS 6,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 IPSAS 35, ‘연결 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

1) 자료: <http://www.ifac.org/news-events/2015-01/ipsasb-publishes-standard-first-time-adoption-accrual-basis-ipsas>

| 기준서 명 | 관련 현행 기준서 |
|---|---|
| IPSAS 3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 IPSAS 7,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
| IPSAS 37, '공동 약정' (Joint Arrangements) | IPSAS 8,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terests in Joint Ventures) |
| IPSAS 38, '타 회계실체에 대한 지분의 공시'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 IPSAS 6,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 | IPSAS 7,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
| | IPSAS 8,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terests in Joint Ventures) |

▶ 상기 5가지 기준서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²⁾

- IPSAS 제34호, '별도 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의 요건은 현행 IPSAS 제6호의 별도 재무제표의 조항과 매우 유사함
- IPSAS 제35호,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는 IPSAS 제6호와 유사하나, 일시적으로 종속실체를 연결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IPSASB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연결회계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 IPSAS 제36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는 IPSAS 제7호의 현행 지침과 매우 유사하나, 일시적인 투자에 대한 다른 방법의 회계처리는 인정하지 아니함
- IPSAS 제37호, '공동 약정(Joint Arrangements)'에는 여러 가지 공동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및 구분 요건을 제정함. IPSAS 제37호는 공동 약정을 공동경영(joint operation)과 공동기업(joint venture)으로 분류하나, IPSAS 제8호는 3가지 종류(공동으로 실체에 영향력 행사, 공동으로 경영에 영향력 행사, 공동으로 자산에 영향력 행사)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IPSAS 제37호는 공동경영 및 공동기업의 공동약정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지분을 해당 실체가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자료: <http://www.ifac.org/news-events/2015-01/ipsasb-publishes-ipsass-accounting-interests-other-entities>

- IPSAS 38, ‘타 회계실체에 대한 지분의 공시(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는 IPSASs 제6호~제8호에 포함된 공시관련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매도할 의도가 있는 실체 및 연결대상이 아닌 실체에 대한 새로운 공시의무를 도입함

나.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동향

1)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세부 내용 논의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는 2014년 12월 17~18일간 재무보고 개념 등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FASAB 조사연구실로부터 보고받고 그 세부 내용을 논의함

| 프로젝트 | 내용 |
|---|--|
| Concepts - The Financial Report (재무보고 개념) | 유용한 예산정보에 대해 전문가패널 토론 |
| DoD Implementation Guidance Request Project (국방부 이행지침 요구사항 프로젝트) | 국방부 이행지침 요구사항 프로젝트(DoD Implementation Guidance Request Project)의 계획 보고 |
| Leases (리스) | 정부 내 리스회계처리 지침 (guidance for intragovernmental leases) 발표 |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민관공동사업) | 민관공동사업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조회서(Comment letters) 내용 검토 중 |

2) 유용한 예산정보에 대해 전문가 패널 토론³⁾

FASAB는 두 차례의 전문가 패널과 만나 재무보고서에 포함될 유용한 예산정보에 대해 논의함

〈첫 번째 패널과 논의한 사항〉

- [주제] 미국 연방정부의 연결재무보고서(Consolidated financial report)에서 제시하는 유용한 예산 정보는 무엇인가?
- [패널] Robert L. Bixby(Concord Coalition 이사), Paul L. Posner(George Mason University 교수), C. Eugene Steuerle 등(The Urban Institute 연구원)
- [토론1]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예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 분류 방안
- [토론2] 조세지출 등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 제공 시 고려 사항

3) 자료: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concepts-the-financial-report/>

- ▶ [토론1]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예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 분류 방안
 - 정보이용자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능이나 범주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이용자는 대부분의 예산이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연방정부의 임무와 목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하위기능별 보고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 [토론2] 조세지출 등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 제공 시 고려 사항
 - 조세지출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보고하는 방법 결정이 중요
 - 장기전망은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현재가치 회계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FASAB는 장기전망 정보의 활용 증대를 위해 관리예산처(OMB), 감사원(GAO), 의회 예산실과 공동으로 기준마련 및 규칙 설정에 관한 작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무보고서의 맨 앞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바람직함

〈두 번째 패널과 논의한 사항〉

- [주제] 미국 중앙부처의 재무보고서(Agency financial reports)에서 제시하는 유용한 예산 정보는 무엇인가?
- [패널] Carol S. Johnson(OMB 프로그램 심사관), S. Anthony(Tony) McCann(University of Maryland 겸임 강사), Denise Wu(CliftonLarsenAllen LLP 교장)
- [토론1] 기존 예산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2] 프로그램별 정보 및 보다 세분화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

- ▶ [토론1] 기존 예산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예산정보 중 예산재원보고서는 집계단위가 너무 높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임
 - 재무제표와 각종 보고서 간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의 필요성 강조
 - 예를 들어 현재 소비와 의무라는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독자를 혼동시킬 수 있음

▶ [토론2] 프로그램별 정보 및 보다 세분화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

- 사용자는 다른 분류방식보다 프로그램별 분류된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음
- 재무제표와 공시정보는 현재 예산정보와 관련된 기타 보고서에서 제공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3) 정부 내 리스회계처리지침(안) 발표⁴⁾

2014년 10월 회의에서 FASAB는 정부 내 리스회계처리지침을 단순화하도록 FASAB 조사연구실에 지시하였고, 이에 2014년 12월 회의에서 정부 내 리스회계처리지침(안)을 발표함

- 본 지침에는 현행 FASAB의 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을 기반으로 리스의 특성을 기술하는 특정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정부 내 리스계약의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의 인식과 공시에 관한 개정사항이 반영됨
- 이에 FASAB는 정부 내 리스회계처리의 일관성과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 간의 대칭적 회계 처리를 강조함

FASAB 조사연구실은 연방정부의 리스회계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리스 관련 예비검토보고서의 첫 3장에 대한 분석을 제시

FASAB 조사연구실은 정부 내 리스회계처리지침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계속 운영하고, 최근에 발표된 GASB의 리스 관련 예비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2015년 2월 위원회 회의 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

- GASB의 리스 관련 예비검토보고서는 2014년 11월 의견수렴을 위해 공표
- 주된 내용은 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배경, 적용 가능성, 범위 및 리스 기간임

* FASAB는 미 재무부, 감사원(GAO), 관리예산처(OMB)에서 공동 관리감독하며 미 연방정부의 회계 기준 제정기구임

* GASB는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민간·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 기구인 FASAB와 함께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의 관리감독하에 있음

4) 자료: <http://www.fasab.gov/projects/active-projects/leases/>

03

재정통계 동향

1 재정통계 국내동향

가. 2015년 나라살림 공개

기획재정부는 201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2015년 재정수지 전망치를 공개하였다. 2015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4% 수준(7.0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1%(33.4조원) 적자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수입

(단위: 조원, %)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증감률 |
|-----------|-------|-------|-----|
| <총수입> | 369.3 | 382.4 | 3.5 |
| ▪ 예산 | 243.7 | 248.8 | 2.1 |
| 일반회계 | 219.1 | 224.0 | 2.3 |
| 특별회계 | 24.6 | 24.7 | 0.5 |
| ▪ 기금 | 125.6 | 133.6 | 6.4 |
| (사회보장성기금) | 69.8 | 74.5 | 6.7 |

2) 총지출

(단위: 조원, %)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증감률 |
|-----------|-------|-------|------|
| <총지출> | 355.8 | 375.4 | 5.5 |
| ▪ 예산 | 250.8 | 260.1 | 3.7 |
| 일반회계 | 201.6 | 208.7 | 3.5 |
| 특별회계 | 49.2 | 51.4 | 4.5 |
| ▪ 기금 | 105.0 | 115.3 | 9.8 |
| (사회보장성기금) | 30.8 | 34.1 | 10.8 |

3)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증감액 |
|--------------|-------|-------|------|
| 통합재정수지(A) | 13.5 | 7.0 | △6.5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 39.0 | 40.4 | 1.4 |
| 관리재정수지(A-B) | △25.5 | △33.4 | △7.9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1.0%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OECD 국가 일반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

OECD 국가는 정부의 지출을 기능별로 집계한 결과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는 정부 지출의 기능을 COFOG(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라 총 열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2012회계연도 OECD 주요국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액이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요약한 결과이다.

(단위: %)

| 구 분 | 한국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일본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미국 |
|-------------|-----|-------|------|-----|------|------|-----|
| 일반공공행정 | 15 | 14 | 15 | 11 | 11 | 9 | 15 |
| 국방 | 7 | 1 | 15 | 2 | 2 | 3 | 11 |
| 공공질서 및 안전 | 4 | 3 | 4 | 3 | 4 | 2 | 5 |
| 경제 | 20 | 12 | 6 | 10 | 9 | 10 | 9 |
| 환경보호 | 3 | 1 | 1 | 3 | 3 | 2 | 0 |
|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 3 | 1 | 1 | 2 | 1 | 2 | 2 |
| 보건 | 14 | 15 | 12 | 18 | 18 | 17 | 21 |
| 휴양 문화 종교 | 2 | 2 | 4 | 1 | 4 | 3 | 1 |
| 교육 | 17 | 10 | 16 | 8 | 12 | 13 | 16 |
| 사회보호 | 15 | 41 | 26 | 42 | 36 | 39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stats.oecd.org

04

오피니언



김경호_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부재정통계도 이제는 발생주의가 대세

세계 각국이 근대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부부문은 예산 제도를 주요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해왔다. 예산의 목적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세수와 정부의 지출에 대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예산에 대한 결산과정인 예산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수치와 회계보고서도 현금주의(cash basis)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와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기반을 둔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지금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 조직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변동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회계기록의 대상이 현금이 아닌 다른 경제적 자원,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나 채권 등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 현금주의와는 다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비교할 때 복잡하고 정보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부문인 기업에서는 이미 수백년간 사용되어 오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예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얼마를 세수 또는 정부사업으로 조달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당초 예산에서 계획한대로 사업을 잘 집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분석하는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재무회계결산 결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부동산과 채권 등 정부가 소유하는 여러 유형의 자산과

정부의 부채를 포함하는 재정상태 정보와 정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프로그램의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예산회계 정보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재정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예산회계가 한 해의 수입과 지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그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주축으로 20세기 중후반부터 발생주의를 정부부문 회계에 도입하려 노력해 온 것은 발생주의의 그러한 장점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10여 년 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OECD 국가 중에는 15번째로 국가재무제표(2011회계연도)를 공식적으로 작성·공표하였다. 2015년은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다섯 해째가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있으나 정부자산 관리의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제 정부회계제도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통계에도 발생주의를 핵심개념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국제금융기구인 IMF는 정부재정통계 작성지침인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을 제공하여 각국이 재정통계를 일관되게 작성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최근 버전인 GFSM 2014에서 완전 발생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발생주의를 도입하였던 GFSM 2001을 개선하여 발간하게 된 GFSM 2014에서는 정부회계에서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인 대차대조표가 중심보고서 역할을 하며 수익과 비용의 측정과 자산의 평가에 있어 발생주의 회계와 공정가치의 개념을 사용하는 등 통계와 회계의 거리가 한층 좁혀지게 되었다. 사실 재정통계와 정부회계는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통계와 회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통계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통계란 모든 사회 및 자연현상을 나타내 주는 의미를 가진 수치이며 개별 자료로는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자료를 모아 서로 비교하면 하나의 현상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지고 이러한 통계를 이용하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회계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에게 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양자의 목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대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수의 이용자가 있으며 통계 또는 회계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인 통계수치는 인구, 국토면적, 평균 기온 및 강수량, 실업률 등 재정수치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치를 포함하지만 재정통계로 한정하게 되면 재정수입과 지출, 부채 및 소득 등 대부분 정부회계시스템에 의해 수치가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재정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되려면 그때 그때 필요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통계수치를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에서 직접 산출하거나 적어도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회계시스템에 의해 제공받아 통계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공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의 재정통계가 발생주의 수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회계도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 전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이 전적으로 재정통계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양 측면에서 모두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채무통계가 발생주의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규모 논쟁’이 지속되었던 바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재정통계에서 국가채무의 규모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가채무는 이백 몇십조원인데 실제 채무규모는 천조원이 넘는다는 주장들이 야권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으며 정부는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채무통계와 국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비록 상이한 수치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차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채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오해는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제 발생주의를 사용하게 된 재정통계지침에서도 채무의 계산방식과 포괄범위가 재무제표상 부채 계산과의 차이를 점차 좁히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다.

통계와 회계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이며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경우에는 특히 정보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인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거부터 사용하여 온 현금주의적인 예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발생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통계와 정부회계를 사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이미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노력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국가회계와 재정통계 부문에서 최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길 기대한다.

※ 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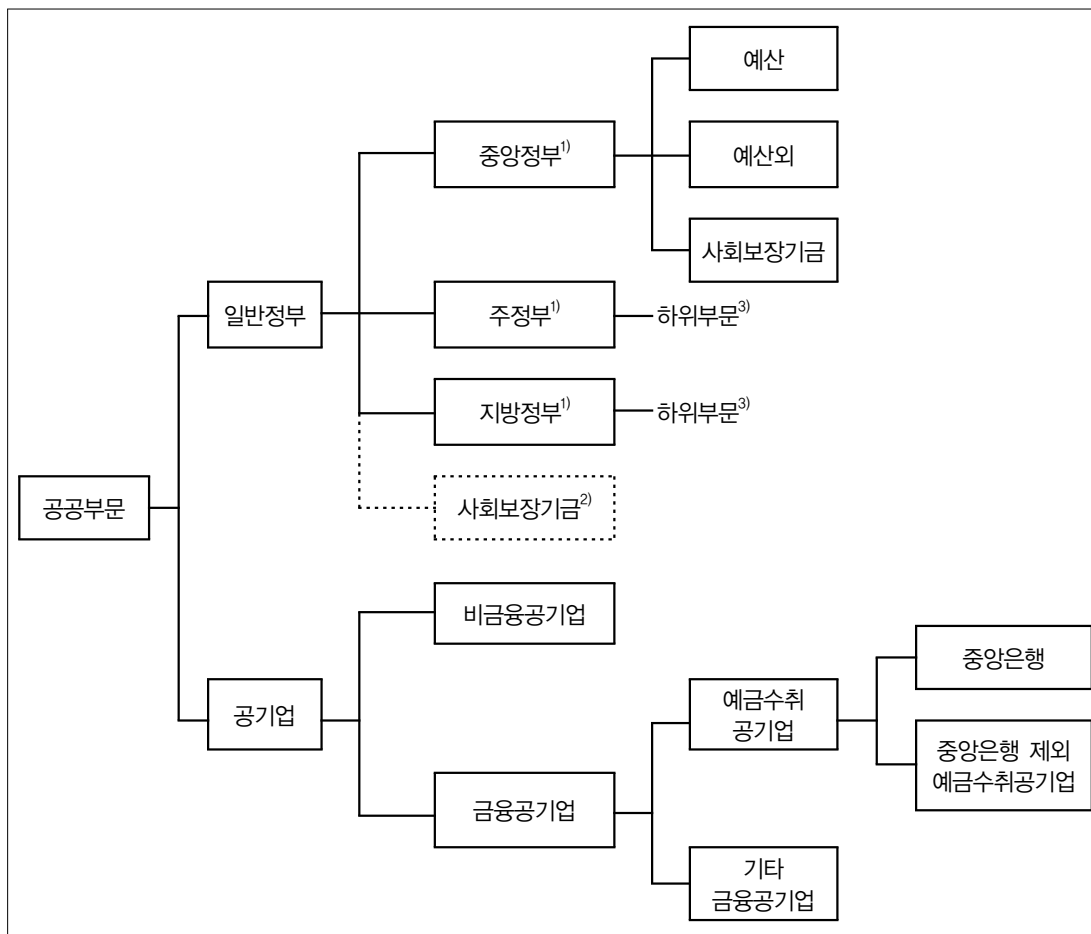
정성호 _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재정통계 매뉴얼(GFSM) 2014 개정의 시사점

최근 IMF는 재정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통계의 보고 원칙을 제시한 재정통계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M) 2001을 업그레이드한 GFSM 2014를 발간하였다. 이번 버전에서는 재정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수지항목(balancing items)을 추가하였으며, 재정분석에 적합한 재정통계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과 「국제수지와 국제투자지침(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등과 같은 다른 거시경제통계체계와 더 밀접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재정통계 작성 시 통계의 포괄범위, 일부 항목의 정의와 분류 방법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별 통계치의 일관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의 포괄범위, 부문분류 원칙의 실제적 적용, 우발부채의 구체화, 사회보호부문의 구체화, 리스·면허·인가·기타계약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림 1] 공공부문 포괄범위



주: 1)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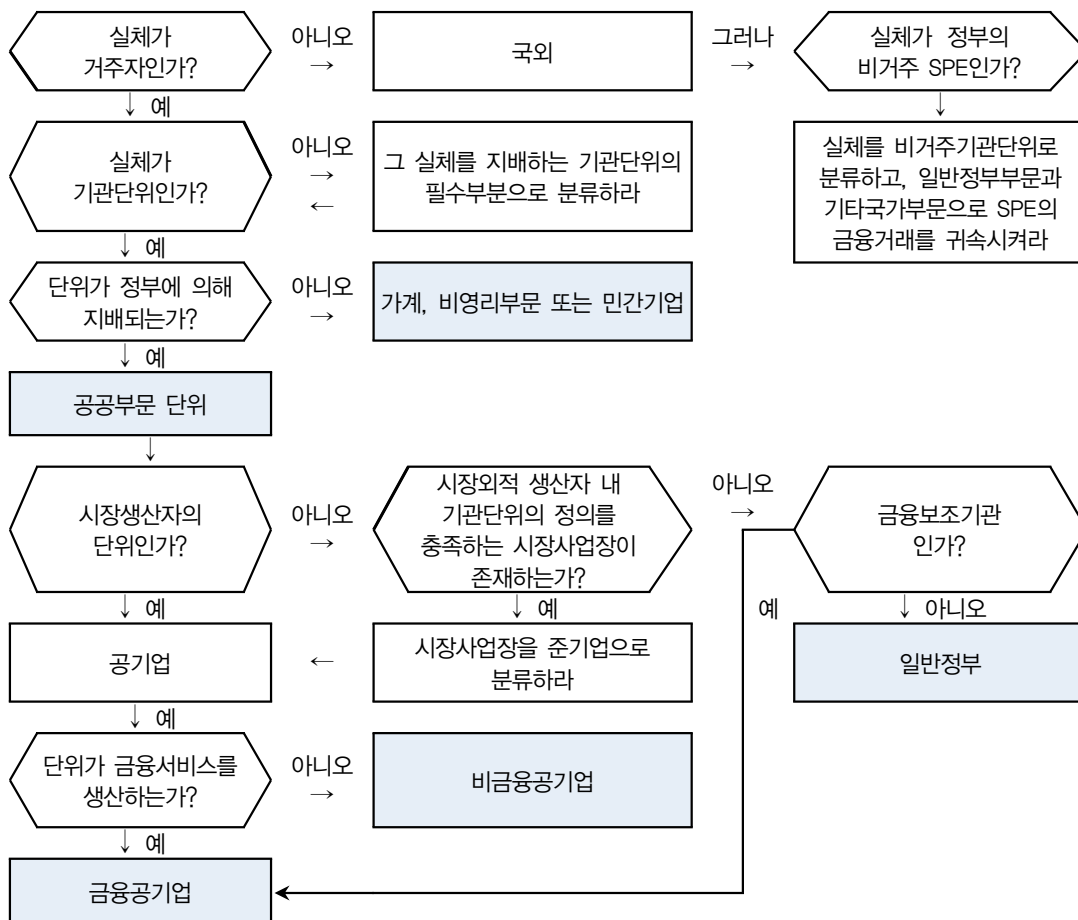
2) 대안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은 박스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분리된 하위부문으로 집계될 수 있음

3) 예산단위, 예산외 단위, 사회보장기금은 주 및 지방정부에 존재할 수 있음

먼저, 공공부문 포괄범위 중 일반정부 부문의 하위부문이 구체화되었는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를 예산상 정부, 예산외 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융공기업 하위부문은 예금수취공기업(중앙은행, 중앙은행 제외 예금수취공기업)과 기타 금융공기업으로 세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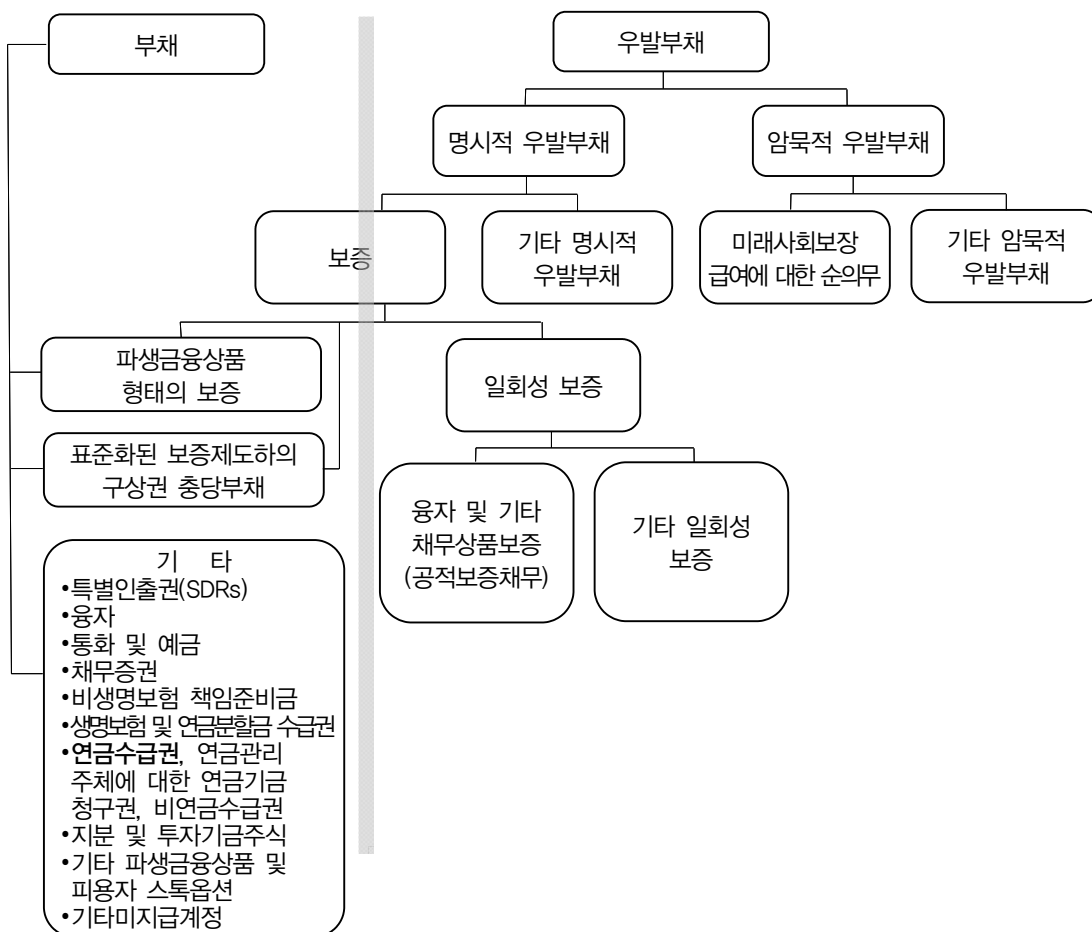
이와 함께 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반정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가계·비영리부문·민간기업 등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림 2]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성, 기관단위, 지배, 시장 생산자 또는 시장의 생산자 여부 등이 이러한 분류의 결정요인이 된다. 특히, 부문 분류가 까다로운 준기업, 구조조정기관, 금융보호제도, 특수목적기관, 조인트벤처, 감채기금, 연금제도, 강제적립기금, 국부펀드, 시장규제기관, 개발·인프라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한 정의 및 분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분류기준의 제시를 통해 GFS 통계 작성범위에 대한 국가별 일관성이 제고되었다.

[그림 2] 부문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트리



또한 우발부채에 대한 분류 기준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GFSM 2001에서는 우발계약의 범주로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를 정의하였으며, 특히 우발계약을 우발부채의 발생 원인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GFSM 2014에서는 우발부채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적인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공공부문부채통계(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충당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고용관련 연금부채(공무원·군인연금)는 기타 부채 중 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으로 분류하고, 사회보장성급여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net obligations for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로 분류하여 부기항목으로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3] 우발부채의 상세 분류



우리나라는 GFSM 2001에 따라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정통계를 2013년(2012회계연도 통계)부터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부채통계(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통계를 제출하는 등 재정통계 분야의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재정운영의 책임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GFSM 2014 개정에 발맞춰 우리 센터에서는 GFSM 2014 한글판을 2분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한글판 발간을 통해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통계 작성에 있어 국제표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여 신뢰성 및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오피니언에서는 새로운 버전의 매뉴얼에서 변경된 부분 및 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추후 GFSM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상의 변경사항, 통계 작성 시 반영사항, 정책 활용에의 시사점 등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할 것이다.

※ 본 뉴스레터의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5

센터 동향

1 2014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2014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결산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은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작성 지원을 위해 편성되어 지원이 필요한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오고 있다.

결산실무교육은 크게 이론교육(1일차)과 실습교육(2일차), 실무교육(3일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 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론교육 중 ‘국가결산 개요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연계과정의 이해’,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 ‘내부거래 제거 방법’으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전담하였다.

교육 첫째 날 지원단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하여 실시한 ‘국가결산 개요 교육’은 주로 결산지원단 운용 계획과 함께 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일정 등 결산과정 중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연계과정의 이해’ 교육은 예산업무 처리 결과 회계처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은 결산작성지침의 개정사항과 함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각종 재무결산 오류사례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제거 방법’ 교육은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되어야 할 내부거래의 유형을 보여주는 한편, 유형별로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은 교육 이후 각 중앙관서로 배치되어 5월 말까지 총 5개월에 걸쳐 2014회계연도 결산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2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영향 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

지난 2014년 12월부터 3개월여간 외부용역으로 진행된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울 대우재단빌딩 PEMNA 회의

실에서 열렸다. 용역을 담당한 이정회계법인 허용 이사의 발표에 이어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동 연구용역은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의 도입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보고서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도입 효과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각종 결산정보와 언론기사, 감사원 결산검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주의 국가 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1회계연도를 기점으로 도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의 발생주의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① 자산정보가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 제고에 미친 효과, ② 부채정보와 재정건전성 관계를 부각시키는 효과, ③ 재정정보 대상의 확대와 재정거래의 완전성 제고, ④ 프로그램별 세입세출정보와 원가정보의 비교 등 이상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 1. 자산정보가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 제고에 미친 효과

기존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의 결산결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유재산 중 토지, 공작물, 입목 축 금액이 2011회계연도를 기점으로 급증하였음을 밝히고, 이는 복식부기의 검증기능에 따른 누락

자산의 등재와 함께 자산재평가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도입 기대효과 중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국가자산 관리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서 국유재산 등 국가재산에 대한 지적 건수와 금액이 도입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발생주의 도입 이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오류가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회계거래와 자산관리 현황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도입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2. 부채정보와 재정건전성 관계를 부각시키는 효과

많은 OECD 국가(전체의 약 40%, 발생주의 도입 국가기준 약 60%)에서 총당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해 가는 추세임을 보여주며,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총당 부채까지 부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국가채무 정보에 비해 미래 재정부담능력 예측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국회 제출 이후 연금총당부채 등 부채정보의 언론노출 정도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제고된 효과로 해석하였다.

▶ 3. 재정정보 대상의 확대와 재정거래의 완전성 제고

발생주의 도입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제·개정에 따라 세입세출 관련 공시 대상 회계실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까지 확대되고, 정책사업별로 원가와 수익을 통합한 발생주의 정보가 산출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거래까지 회계정보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재정 활동에 대한 완전성이 제고되는 도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 프로그램별 세입세출정보와 원가정보의 비교

발생주의 원가정보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효과를 나타내고, 거시적 관점의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3 2013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작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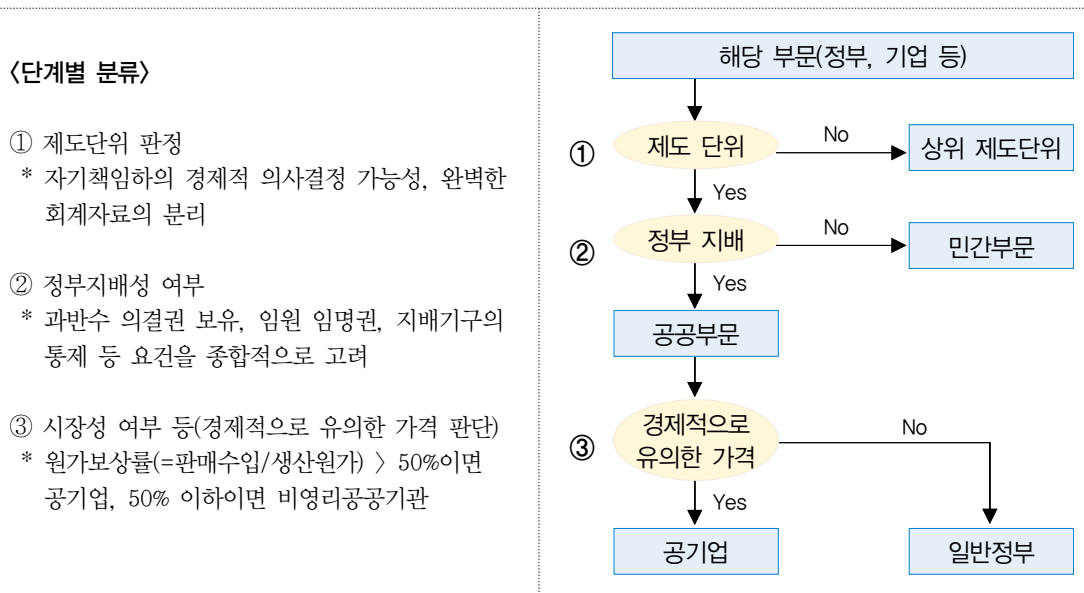
가. 2013회계연도 일반정부의 부문별 재정수지 산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3회계연도 '01GFS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확정해서 2015년 3월에 IMF에 제출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관련 내용을 실을 예정이다.

나. 2014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재정통계 포괄범위 검토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29일 의결을 통해 20개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신규 지정된 기관 및 지정 해제된 기관에 대한 개별 검토를 통해 2014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변경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에는 신규지정기관 20개가 모두 포함되며, 지정해제기관은 모두 제외된다. 일반정부 포괄범위에는 신규 지정기관의 원가보상률, 정부판매비율 등을 검토하여 일반정부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고, 지정 해제기관은 일반정부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편, 2015년 신규 지정된 기관 및 지정 해제된 기관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 관 명 |
|-------|--|
| 신규 지정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주)해울,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재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
| 지정 해제 |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주),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

다. 공공부문 부채통계 공동 작성 TF 지원

2014년 2월 정부(기획재정부)의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통계의 발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 간 차이를 해소하고 적시성 있는 분기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가회계재정통계를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는 분기별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해서 공공부문 부채 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해서 분기별 공공부문 부채(잠정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정리된 양 통계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정부(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
| 통 계 명 | 공공부문 부채통계 | 자금순환통계 |
| 작성목적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판단 | 경제주체 간 자금흐름 파악 |
| 작성기준 | PSDS | 2008 SNA |
| 규모산정 | 내부거래 제거 | 총액기준 |
| 평가방법 | 명목가치(nominal value) | 시가평가(market value)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5년 1/4분기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해서 내부거래 제거, 명목가격 조정, 기타 미지급금 등의 조정사항을 통해서 분기별 공공부문 부채(잠정치)를 산출할 계획이다.

라. 201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PIFRS 결산시스템의 모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사전 모의테스트를 통해 XBRL 연계서식, 계산식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결산서 제출 대상인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0개)으로부터 회계처리,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주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아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30개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24개의 공기업의 결산서를 검토하여 회계 처리 오류 및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결산서 승인 작업에 참여하였다.

4 『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 한글판 발간 예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MF의 재정통계매뉴얼(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최종판 발간에 발맞춰 『재정통계매뉴얼 2014』 한글판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글판 매뉴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번역 및 학제 간 협의 등 강독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정 및 검토를 거쳐 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재정통계매뉴얼 2014』 한글판 발간을 통해 정책결정자, 재정통계 작성자 등의 실무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회, 국민, 기타 전문가 등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OECD 발생주의 회계제도 심포지엄 참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완희 소장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OECD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 관련 주요기관인 IPSASB, IASB, Eurostat 등의 현안 발표, 개별 참가국(한국 포함)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현황 및 개선사항 발표를 중심으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센터는 동 심포지엄 참석을 통해 발생주의 회계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이슈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발생주의 회계 주요기관 발표내용

- 1)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 및 관련지침의 보급관련 현재 진행상황 및 IPSASB 관리·감독기구(Governance Review Group) 설립 진행경과 발표
- 2)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 국제회계기준(IFRS)의 최근 연구동향과 이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영향 발표
- 3) Eurostat
 - : 유럽공공부문의회계기준(introduction of 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EPSAS)의 도입과 관련된 현황 보고
- 4) OECD
 - : OECD 사무국의 발생주의 회계 및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국가 현황조사 결과 발표

나. 한국의 주요 발표내용

- 1)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현황: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연혁,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 결과
- 2) 국가회계제도 법령체계: 「국가회계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국가회계기준 등 법령 체계 설명, 국가 회계처리지침과 IPSAS와의 관계
- 3) 회계처리기준 제정절차: 국가회계처리기준 제정절차, 기획재정부·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 및 관계 설명
- 4) 국가재무제표 작성: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일정, 국가재무제표 통합 절차 등
- 5) dBrain 시스템: 한국의 회계정보 시스템의 역할 및 구조 설명
- 6) 도입성과 및 향후과제: 연금충당부채와 사회기반시설 인식,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재무제표 이해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 제고 등 향후 추진 과제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종청사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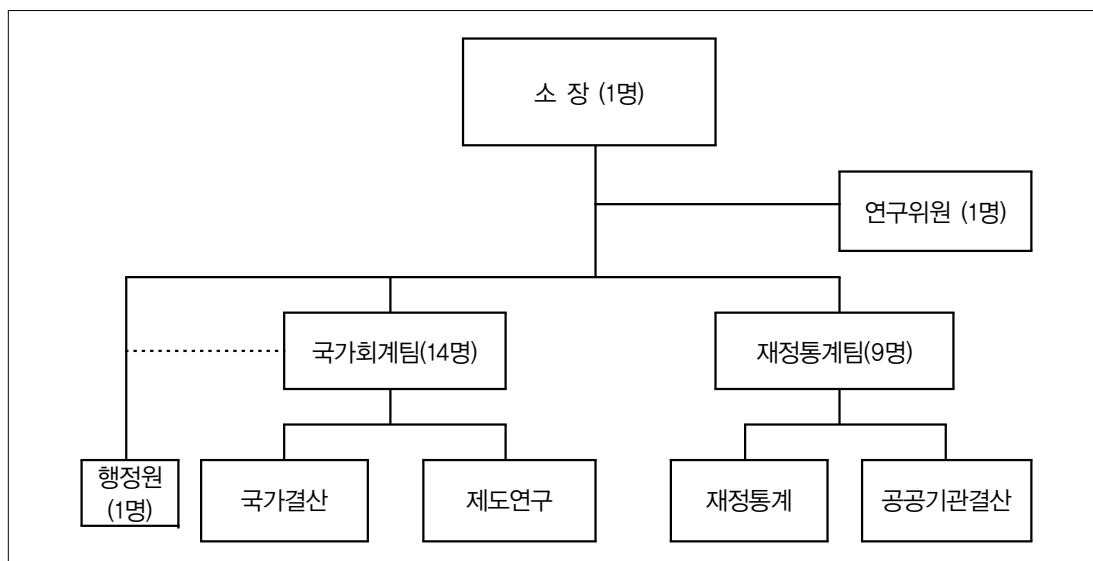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통합되어, 본원(서울, 가락동 소재)과 분리된 서울역 대우재단빌딩에 위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4년 10월 13일부로 본원과 함께 세종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국가회계팀과 재정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분기 현재 김완희 소장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가회계팀은 국가결산지원 및 회계예규 제개정 등 국가회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통계팀은 GFS 및 PSDS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과 공공기관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15. 3월 현재)〉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본·수시과제 등 원내 연구진과 협업이 용이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센터는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검토와 함께 국제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자료를 산출함은 물론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대안제시를 하는 연구기능이 강화된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06 공지사항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과제 수요조사 안내

우리 센터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요조사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기초연구 또는 정책연구과제는 심의를 통해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또는 당해 수시 연구과제로 수행할 것입니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업무분야

- ▶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 ▶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 국가재무제표 및 공공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지원
- ▶ 재정통계 산출 지원 등

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연 도 | No. | 보고서 명 |
|---------|-----------|--|
| ■ 연구자료집 | | |
| 2012 | 2012-01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관련 해외사례조사 |
| | 2012-02 | 공적연금회계처리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연구 |
| | 2012-03 | 주요 5개국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
| 2014 | 2014-01 | 정부재정사업의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 ■ 번역자료집 | | |
| 2012 | 2012-0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
| | 2012-02 |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Citizen's Guide) |
| | 2012-03 | 2011회계연도 미국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미국 감사원 의회 증언문 |
| | 2012-04 | 발생주의 재정수지와 현금주의 재정수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
| ■ 조사자료집 | | |
| 2012 | 201204-01 | BTL 지원 사업 보조금 부채 인식 여부 검토 |
| | 201204-02 | 국가회계 자산재평가 이해 |
| | 201205-01 | 공적연금회계처리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연구 |
| | 201208-01 | GFSM 2001과 국가회계기준의 차이 분석 |

| 연도 | No. | 보고서명 |
|-----------|--------------------------------|--|
| 2013 | 201208-01 |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부채의 인식 |
| | 201209-01 | GFSM 2001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이해 및 작성 방안 검토 |
| | 201210-01 | 공공부문 채무통계 작성 지침 주요내용 |
| | 201211-01 |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 번역 |
| | 201211-02 | 주요 5개국 국가회계제도 비교분석 |
| | 201211-03 | 국민연금 수익인식기준 해외사례조사 |
| | 201211-04 | 주요 이슈별 회계기준 차이 분석 보고서 |
| | 201301-01 | 보조금 관련 부채 인식기준 |
| | 201301-02 | 공공부문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 검토 |
| | 201301-03 | 주요 5개국 연금충당부채 산출 시 적용한 보수상승률 조사 |
| | 201301-04 | GFSM 2001과 회계기준 차이 요약 |
| | 201301-05 | GFSM 2001과 일반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
| | 201301-06 | GFSM 2001과 특정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분석 |
| | 201301-07 | GFSM 2001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분석 |
| | 201301-08 | GFSM 2001과 경제인문사회 출연연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분석 |
| | 201301-09 | GFSM 2001 도입과 통합재정통계의 변화 |
| | 201302-01 | 캐나다 정부회계기준서 PS3410 번역 |
| | 201302-02 | 주요 국가 연금충당부채 조사 |
| | 201303-01 | OECD 국가 내부통제제도 규정조사 |
| | 201303-02 | 주요 국가 연금충당부채 관련 주석 |
| | 201303-03 | OECD 발생주의 회계 도입 국가 현황 |
| | 201303-04 | 주요 국가 재무제표 포괄 범위 |
| | 201303-05 | 2012년 일본 국가 재무제표 번역 |
| | 201304-01 | GFS 공공기관 통합재정통계 작성지침 |
| | 201304-02 | 국가회계제도 영문 Q&A 모음집 |
| | 201304-03 | GFSM 2012의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 |
| | 201304-04 | 공공부문채무통계 작성시 고려할 사항 |
| | 201305-01 | Pension workshop 국외출장 보고서(호주) |
| | 201306-01 | IPSAS CP Social benefits 주요내용 해석 및 검토 |
| | 201306-02 | 캐나다 국민연금 재무제표 주석해석 |
| | 201306-03 | 부처별 현재가치평가 분석보고서 |
| | 201306-04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마련 |
| | 201307-01 | 준비금 및 충당부채의 개념비교 |
| 201307-02 | 제재금 수익 인식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201307-03 | 몰수품 및 압수품 자산인식 시점 검토 | |
| 201307-04 | 2013년 신규 공공기관 원가보상률 검토보고서 | |
| 201307-05 |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의 분류 검토보고서 | |
| 201309-01 | 국가회계법령등 체계정비 방향 | |
| 201309-02 | 주요회계기준 구조 비교 및 IPSAS 기준서별 요약 | |
| 201309-03 | IPSAS 32. 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번역) | |
| 201309-04 | 공공부문 회계기준 차이 분석보고서 | |
| 201310-01 | 주요 회계기준의 구조 비교 및 SFFAS 기준서별 요약 | |
| 201310-02 | 주요국가 충당부채 및 지역연금 조사 | |
| 201310-03 | 주요국 PBO적용 시 보수 상승률 가정조사 | |
| 201310-04 | IPSAS 28. 금융상품: 표시(번역) | |
| 201310-05 |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번역) | |
| 201310-06 | IPSAS 30. 금융상품 공시(번역) | |
| 201310-07 | IPSAS 31. 무형자산(번역) | |
| 201311-01 | 국가회계기준체계개편 TF개최 | |

| 연 도 | No. | 보고서 명 |
|-----|-----------|------------------------------------|
| | 201311-02 | IPSAS 25 종업원급여(번역) |
| | 201311-03 | IPSAS 26 현금창출 자산의 손상(번역) |
| | 201311-04 | IPSAS 27 농림어업(번역) |
| | 201311-05 | 국가회계기준 등 체계정비 방안 및 추진현황 |
| | 201311-06 |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지침 |
| | 201312-01 | 각 국가회계개편지침과 해외기준서 비교 |
| | 201312-02 | 국가회계편람 초안 마련(22개 지침개편) |
| | 201312-03 | GFSM 2001 도입과 재정통계의 변화(기고문) |
| | 201401-01 | 국가회계 규정집 편집방안 |
| | 201401-02 | 국가회계기준 등 체계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 201401-03 | 지침별 최종수정본(편람, 신규대비표) |
| | 201401-04 | 국가회계규정집 종합검토반 개최 및 안전보고(1-7차) |
| | 201403-01 | 공공부문 정책금융 현황 조사 |
| | 201403-02 |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표준화보증현황 조사 |
| | 201403-03 | 국가회계기준 등 체계정비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 |
| | 201403-04 | 국가회계편람 중앙관서 의견조회 및 대응 |
| | 201403-05 | 기획재정부(일반회계) 재평가자산의 무상관리전환 인식 |
| | 201403-06 |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조사 |
| | 201403-07 | 국민연금제도 주요국 비교 |
| | 201403-08 |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 비교 |
| | 201403-09 | 주요 국가 재무제표 작성 포괄범위 |
| | 201404-01 | 2013회계연도 GFS, PSDS 공공기관용 통합 작성지침 |
| | 201404-02 | 201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보고서 |
| | 201404-03 | 국가회계편람 인쇄본(14. 4. 16 기준) |
| | 201404-04 | 국가회계편람 수정보완사항 보고 |
| | 201404-05 | 연금충당부채 주석 번역(프랑스 주석요약 포함) |
| | 201404-06 | 퇴직수당 해외사례 조사(일본) |
| | 201404-07 | 주요국 연금제도 및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요약 |
| | 201404-08 | 연금채무의 개념과 보험수리적평가방법 비교 |
| | 201404-09 | 연금충당부채 할인을 해외사례조사 |
| | 201404-10 | 연금충당부채와 장기재정추계 조사 |
| | 201405-01 | 정책금융 회계처리 및 용자금의 유형화 검토보고서 |
| | 201405-02 | 재정수지 개념 및 OECD 재정동향 조사 |
| | 201405-03 | 연금회계준칙 등의 개정안 |
| | 201405-04 |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 기말결산시 “기본순자산” 반영 규정검토 |
| | 201405-05 | 퇴직급여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미국) |
| | 201405-06 | 비교환거래에 따른 부채 인식기준 해외사례 조사 모음 |
| | 201406-07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사회보장성 기금의 회계처리) |
| | 201407-01 | 2013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검토결과 보고서 |
| | 201407-02 | 특정사업의 원가활용 연구추진계획 및 TF 개최 |
| | 201409-01 | 신뢰성높은 원가정보산출을 위한 개선방안 |
| | 201410-01 |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원가분석 및 성과평가연계 활용방안 발표 |
| | 201410-02 | 2013회계연도 공공부문 표준화보증현황 조사 |
| | 201410-03 | 공공기관 구분회계 재무정보 검토 |
| | 201410-04 |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
| | 201411-01 | 2014회계연도 결산교육-업무유형별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 |
| | 201411-02 |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I) |
| | 201412-01 | 국가회계편람 신규조문대비표 |
| | 201412-02 | GFSM 2014의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

2014

| 연 도 | No. | 보고서 명 |
|------|--------|----------------------|
| ■기타 | | |
| 2012 | 12월 발행 | 국가회계제도 홍보브로슈어(국·영문) |
| | 12월 발행 | 국가회계제도 백서(기획재정부 공저) |
| 2014 | 9월 발행 | 재무결산 오류사례집(기획재정부 공저) |
| | 12월 발행 | 국가회계편람(기획재정부 공저) |

2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편 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국가회계 해외동향)

임정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국가회계 국내/센터동향)

이진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재정통계 국내/센터동향)

엄기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재정통계 해외동향)

이계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공지사항)



전/략/목/표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5년 3월 31일 발행